

# 국민연합 당헌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 (명칭)

명칭은 “국민연합”이라 한다.

### 제 2 조 (목적)

“국민연합”은 기존 정치권과 완전차별화 하여 국민을 대변 하고 서민을 위한 시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개조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당으로 대한민국정치를 완전 혁신 한다.

### 제 3 조 (조직구성/관리)

① “국민연합” 중앙당, 시·도당으로 구성된다. 중앙당은 수도에 시·도당은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도, 특별자치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둔다.

## 제 2 장 당원

### 제 4 조 (요건)

- ① “국민연합”의 이념과 나아가자 하는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.
- ② 입당, 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중앙당 당규로 정한다.

### 제 5 조 (권리 및 의무)

-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1.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  2.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
  3.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  4.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

-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1. 당헌·당규를 지킬 의무
  2.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
  3.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
  4.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
  5.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
- ③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- ④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.
- ⑤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,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,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1. 각종 의결기관의 “대의원위원회, 최고위원회” 및 선거인단 구성시 여성을 10%로 한다.
  2. 각종 선거(지역구)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10%로 하도록 한다.
  3.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10% 이상으로 한다.

## 제 6 조 (당비의 납부 의무)

- ① 당비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.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.

## 제 7 조(당원의 입당/탈당/제명 규정)

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당원으로 요건에 적합 시에는 입당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탈당계를 제출시 탈당으로 처리 확인 당원에게 통보를 해줌으로서 탈당된 것으로 처리되며 당헌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적합지 못할 경우 당 규정을 적용 심의 하여 제명을 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당 기 구(상임위 조직) 구성

#### 제 8 조 (“대의원위원회” 구성)

최고의결기관(대의기간)으로 “대의원위원회”을 둔다.

① “대의원위원회”는 당원참여의 중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재선임 할 수 있으며 그 정수는 1,000인 이내로 하고,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.

1. 당 대표
2. 중앙당 주요당직자
3. 중앙당 및 시·도당 사무처 당직자
4. 각 시·도당 에서 추천하는 당원

#### 제 9 조 (선임)

대의원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여로 과반수이상 선출 받은 자를 대의원위원회에 의장 1인으로 그 외 득표에 따라서 부의장 2인을 둔다.

#### 제 10 조 (간부규정 및 역할)

① 중앙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의장은 “최고위원회”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하며 시·도당사무처장은 시·도당위원장추천을 받아 중앙당 사무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임 할 수 있으며 주요 권한 및 역할로는 당원명부, 입당, 탈당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인계업무자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며 정책위원회의장은 제16조항 에 따라 역할을 다해야 한다.

#### 제 11 조 (소집 및 의결정족수)

① “대의원위원회”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②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, 도당위원장들의 안전이 있을 경우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건을 결정 한다.

## 제 12 조 (기능)

“대의원위원회”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
2. 당헌의 채택 및 개정
3.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
4. 대통령후보자의 지명
5.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
6. 대의원위원회 개최 불가능할시 그 기능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.

## 제 13 조 (당 대표의 선출)

-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대의원 위원회에서 추대한다.
- ② 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유효 투표결과를 70%, 여론조사결과를 30% 반영하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

## 제 14 조 (지위와 권한)

- ① 당 대표는 법적·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.
- ②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(추천권)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과 동시에 시, 도당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규정에 준 하여 임명교체 및 자격정지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“대의원위원회”의 구성으로 과반수 이상참여시 제명 등을 심의 할 수 있다.
- ④ 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 제 15 조 (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)

- ① 당의 정책을 입안, 심의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원총회 아래 정책위원회를 둔다.
- ② 정책위원은 “최고위원회”에서 1차 구성한다.
- ③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  1. 당 정책의 연구, 심의
  2.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
  3. 법률안, 예산안,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
  4.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
  5. 각종 공직 선거 시 공약의 입안, 작성 등 지원
  6.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
- ④ 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정책개발 연구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- ⑤ 대표는 정책위원회의 미구성 등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 직을 대행케 할 수 있다.

## 제 16 조 (정책위원회 의장 등)

-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  1. 정책위원회의 주재
  2. 당 정책에 관한 협의·조정
  3. 당정협의업무 총괄·조정
  4.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의 추천
-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“최고위원회”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임 할 수 없다.
-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 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-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 제 17 조 (의원총회 (구성))

의원총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, 국회의 각종 입법 활동기구 및 원내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다.

## 제 18 조(권한)

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
1. 당의 원내대책 심의·의결
2. 당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 및 의안의 심의·의결
3. 원내대표·국회상임위원장의 선출
4. 국회의장·부의장 후보자의 추천
5. 당무에 대한 의견 제시
6. 원내조직의 구성 및 폐지의 심의
7.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8. “대의원위원회”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·의결

## 제 19 조(의원총회 소집)

- ① 의원총회는 월1회 개최하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② 대표 및 사무총장, 시·도당 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③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20 조(원내대표구성/권한)

-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 1.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
  2.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권한
- 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원내대표의 궐위 시에는 15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④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원내부대표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## 제 4 장 위원회 구성

### 제 21 조 (재정위원회 (구성))

-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재정위원회는 “최고위원회”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들 수 있다.
- ③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# 제 22 조 (기능)

1.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
  2.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
  3.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
- ①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당 운영자금은 당비, 국고보조금, 기탁금,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  - ③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 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 23 조 (디지털/미디어 정당위원회 (구성 및 기능))

- ① 당의 디지털/미디어 구현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, 네티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/미디어정당위원회를 둔다.
- ② 디지털/미디어 정당위원회는 “최고위원회”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디지털/미디어 정당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- ④ “최고위원회” 결의 시 공인전자서명 관리 등 공인인증관리 업무를 관리하며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결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한다.

## 제 24 조 (정책연구소(기구설치/구성))

- ① 당 대표가 대의기관 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정책정당화를 위하여 정책의 개발·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③ 당 대표총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,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구성·운영한다.
- ④ 당 대표총재는 여성·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“최고위원회”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, 여성이 50%이상 참여하도록 한다.
- ⑤ 당 대표는 “최고위원회”의 의결을 거쳐 당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.

## 제 5 장 최고위원회의

### 제 25 조 (구성)

-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·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·조정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의를 둔다.
-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1. 당 대표
  2. 사무총장
  3. 정책의장
  4. 원내대표(부재시 전략기획위원장)
-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.
- ④ 최고위원회의는 당연직 최고위원외 13명 이내로 구성한다.

### 제 26 조 (기능)

-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  1. 대위원위원회 소집 요구
  2. 의원총회 소집 요구
  3.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
  4. 공천관리위원장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



5.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
6.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
7.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
8.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
9.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
10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

### 제 27 조 (소집 및 의사)

-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 제 6 장 공직자선거후보자 선출

### 제 28 조 (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)

- 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·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(이하 “공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와 시·도당에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(이하 “비례대표 공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“최고위원회”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)는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당위원장의 추천과 “대의원위원회”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“최고위원회” 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시·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“최고위원회”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.

## 제 29조 (대통령 및 국회의원(비례대표포함) 후보자 추천기구)

-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“최고위원회”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 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“최고위원회”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-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한다.
- ④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“최고위원회” 의결로 확정하며, “대의원위원회”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.
- ⑤ 대의기관 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 안을 재의결한 경우 “최고위원회”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## 제 30 조 (권한)

-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 1. 당 소속 대통령 및 국회의원(비례대표)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
  2. 당 소속 대통령 및 국회의원(비례대표)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
  3.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
  4.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
  5. 우선추천지역 선정
  6.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 제 7장 시·도당위원장 선출

### 제 3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시·도당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32 조(선거관리기구)

시·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시·도당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선거관리위원회’라 한다)가 관장한다.

### 제 33 조(시·도당위원장 선출방법)

시·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당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소속 지구당 위원장의 투표로 선출한다.

### 제 34 조(지역위원장 선출방법)

해당지역 소속 전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.

### 제 35 조(투표방법)

- ① 투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투표로 한다.
- ② 투표는 투표용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한다. 다만,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(터치스크린투표)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,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중앙당 홈페이지와 시·도당 게시판에 공지하고,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36 조(투개표관리)

-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.
- ② 투표와 개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
### 제 37 조(투개표참관)
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,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38 조(투개표상황의 공개)

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.

### 제 39 조(투표종료)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.
- ②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의 참석 하에 투표함을 봉합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.

### 제40 조(개표절차)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와 검표를 위한 필요한수의 검표위원을 정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개표를 선언하고,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되, 발표 전에 검표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 41 조(무효투표)

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.

### 제 42 조(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)

- ①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### 제 43 조(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)

① 시·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.

1.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2.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시·도당당원대표자대회 과반수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
②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.

1.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2.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,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
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.

## 제 8 장 보 칙

### 제 44조(불복신청)

① 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

### 제 45 조 (권한의 위임)

당헌·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헌·당규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

## 제 9 장 시, 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등

### 제 46조 (인사위원회(구성))

- ① 창당승인 시, 도당, 원내기구 산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핵심당직자의 처분 등에 대한 소청, 불복과 징계 재심 및 특정한 경우 당 원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당 내부규정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며, 인사위원회 위원장(이하 본 절에서는 '위원장'이라 한다)은 대표가 겸직한다.
-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

### 제 47 조 (기능 및 권한)

- ① 인사위원회는 당헌, 당규에 따라 징계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당헌·당규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이행 한다.
- ③ 인사위원회는 시·도당 위원회를 창당한 도·위원장과 당원들은 중앙당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적합지 못할 경우 중앙당 당직자 및 시·도당 당직자들을 취소 또는 해임시킬 수 있으며 당 업무를 중지를 시킬 수가 있다.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우선권을 가지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.
-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및 사무처 당직자 임면절차, 보수, 복무, 징계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- ⑤ 당직자 중에서 당헌·당규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자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료일다음날 자동으로 그 직책이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## 제 10 장 예산/결산/회계

### 제 48 조 (회계연도)

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### 제 49 조 (예산결산위원회)

-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.
-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“대의원위원회”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국회의원 1인을 포함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.
-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“대의원위원회”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
## 제 11 장 당헌(당규)개정

### 제 50 조 (개정 발의)

- ① 당헌의 개정 발의는 “최고위원회”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한다.
- ② 당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 당규는 “당규개정 소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 에서 결정 한다.

### 제 51 조 (의결절차)

- ① 당헌개정안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개최일전 7일까지 공고한다.
- ② 당헌개정은 재적 최고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12 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

### 제 52조 (합당과 해산 및 청산)

-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“최고위원회”가 지정하는 수 임기관의 회의 후 결의가 있어야 한다.
-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당이 소멸 하였을 때에는 당의 자산(재물, 재산)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로 대체하여 이를 청산한다. 다만, 시·도당이 소멸 또는 그 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 때에는 시·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.

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, 청산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은 “최고위원회”에서 심의 정한다.

## 제 13장 시·도당 조직

### 53조 (시·도당대표자대회)

① 시·도당대표자대회(이하‘시·도당대회’라 한다)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② 시·도당대표자대회는 시·도당원 당원으로 구성되며, 시·도당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시·도당대표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. 의장과 부의장 시·도당대의원 가운데 시·도당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시·도당대의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시·도당대표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
1. 시·도당위원장의 선출
2. 시·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
3.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의 의결
4. 그 밖의 당헌, 당규로 정한 권한

⑤ 시·도당대표자대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당에서 사전에 개최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시 시·도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.

1. 시·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시·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
3. 재적 시·도당대의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4.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경우

⑥ 그 밖에 시·도당대의원의 구성,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, 시·도당대표자대회 운영 등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# 제54조(시·도당위원장)

① 시·도당위원장은 시·도당을 대표하고 시·도당의 업무를 총괄한다.



- ② 시·도당위원장은 시·도당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그 밖에 시·도당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를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# 제 55조(시·도당운영위원회)

- ① 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시·도당의 업무 집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.
- ② 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시·도당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시·도당위원장이 맡는다.
- ③ 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  1. 시·도당대표자회의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, 채택
  2. 시·도당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, 의결
  3. 시·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, 의결
  4. 시·도당사무처장의 추천
  5. 시·도당 내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위원장 임명
  6. 그 밖에 시·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당헌, 당규로 정한 권한
- ④ 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2. 재적 시·도당운영위원 1/3 이상이 시·도당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
- ⑤ 그 밖에 시·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# 제 56조 (시·도당 사무처)

- ① 시·도당사무처는 시·도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다.
- ② 시·도당사무처는 사무처장과 당직자로 구성한다.
- ③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, 시·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주요 권한 및 역할로는 당원명부, 입당, 탈당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인계업무자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.

- ④ 사무처 내에 필요에 따라 실무기구 둘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# 제 57조(당원모임)

- ① 당원모임은 시·도당 내 지역별 당원들의 모임이다.
- ② 당원모임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  - 1. 당원의 친목, 정보의 교환, 교육 등 일상적인 당원 활동
  - 2. 그 밖에는 당헌, 당규로 정하는 활동
- ③ 그 밖에 당원모임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## 부 칙

[2024. 08. 30.]

### 제 1 조(효력)

이 당헌은 2024년 8월 30일 개최되는 “대의원대회”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제 2 조 (경과조치)

- ① 이 당헌 시행 이전에 선출된 당직자는 구 당헌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.
- ②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은 구 당헌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부터 적용한다.